

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자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	
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8. 7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조건을 완화하여 연대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하지 못하던 저소득층이 기금융자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를 구미시에 거주하는 2인의 연대보증인에서 1명의 연대보증인으로 변경함(안 제9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- 「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자금 운용 조례」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단서 중 “구미시에 거주하는 2인”을 “1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제9조(신청절차) ①전세입주보증금,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용자를 희망하는 세대에서는 규칙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읍·면·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②생활안정자금 용자를 받고자 하는자는 주소지 읍·면·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이 경우 구미시에 거주하는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.	제9조(신청절차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----- ----- ----- -----1명----- -----	• 저소득층 주민의생활 안정자금 용자신청 조건완화